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605
----------	-------

발의연월일 : 2026. 2. 5.

발 의 자 : 서명옥 · 배준영 · 안철수
김정재 · 박성훈 · 조은희
김종양 · 조정훈 · 김용태
김기웅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그런데 최근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은 방송인들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의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행한 자뿐만 아니라 해당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알면서도 이를 받은 자에 대하여도 처벌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이에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알면서도 이를 받은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둌으로써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하여 국민 건

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6항 신설 및 제 90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누구든지 자신이 받으려는 의료행위가 의료인이 아닌 자가 하는 의료행위 또는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 사항 외에 하는 의료행위임을 알면서도 이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90조 중 “제27조제2항”을 “제27조제2항·제6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 ⑤ (생략) <u><신설></u>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누구든지 자신이 받으려는 의료행위가 의료인이 아닌 자 가 하는 의료행위 또는 의료인 이 자신의 면허 사항 외에 하 는 의료행위임을 알면서도 이 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u>
제90조(벌칙) 제16조제1항·제2 항, 제17조제3항·제4항, 제17 조의2제1항·제2항(처방전을 수령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18 조제4항, 제21조제1항 후단(제4 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 제21조의2제1 항·제2항, 제21조의3제1항 후 단, 제22조제1항·제2항(제40조 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3조제4항, 제26 조, <u>제27조제2항</u> , 제33조제1항 · 제3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5항 (허가의 경우만을 말한다), 제3	제90조(벌칙) ----- ----- ----- ----- ----- ----- ----- ----- ----- ----- <u>제27조제2항·제6항</u> ----- ----- ----- -----

5조제1항 본문, 제38조의2제1항	-----
부터 제4항까지·제9항, 제41	-----
조, 제42조제1항, 제48조제3항	-----
· 제4항, 제77조제2항을 위반한	-----
자나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	-----
을 위반한 자와 의료기관 개설	-----
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	-----
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는 500	-----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